



Q

지하철 상수도 관로이설공사현장입니다. 설계도에 굴착깊이 6.5m, 굴착면의 구배기준 1:0.3(경암기준)으로 되어 있어 설계도대로 작업시 토사붕괴 재해발생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작업장소의 지질을 조사한 결과 보통흙(토사및 매립토)으로 판정되어 발주처에 관련근거(구조계산, 안전성검토)를 첨부하여 기존 설계도대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이것이 계약조건이라는 이유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설계도대로 작업수행 중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자가 발생시 그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A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 책임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시공자)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장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에서 정한 토질에 따른 구배를 준수하거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

외부 석공사와 관련하여 작업발판을 사용시 외부쌍줄비계의 폭이 90cm이며 ‘안’ 마크 작업발판은 폭이 50cm 입니다.(현재 저희 회사가 보유한 작업발판) 쌍줄비계 상에서 작업시 석공사와 같이 무거운 자재로 작업시 작업발판의 고리부분(파이프에 끼어 넣는 부위)이 약하여 작업발판의 고리부위의 파손으로 자재가 낙하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당 현장에서는 ‘안’ 마크 자재위에 보강차원에서 아나방을 겹치게 결손하여 사용중인데 감리단에서는 아나방은 건설회사에서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재라는 이유로 철거하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당 현장에서는 보강차원에서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 작업폭을 확보한 ‘안’ 마크 작업발판을 사용후 그 위에 아나방을 사용하는데 사용이 가능한지요

A

1. 귀 질의에서 외부비계 위에 설치한 작업발판이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이고, 석재와 같은 무거운 자재적재에 대비하여 이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발판위에 유공철판(일명 아나방)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2.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작업발판과 작업발판을 받치고 있는 비계구조의 최대적재하중을 검토하고 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도급사를 “갑” 하도급사를 “을” 이라 칭하여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산재하수급인 보험료납부 인수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득하였다면 하도급사 공사추진 중 산재가 발생하여 처리하였다면 산재의 주체는 을사라고 생각이 들며 갑사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궁금합니다 (예: 업체재해율, 벌점적용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재해율은 (1)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2)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아 하도급업체에서 산재를 처리하였다라도 하도급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 경우라면 당해 재해자는 위 기준(1)에 의하여 도급업체인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율에 산정되며, 노동부장관이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건설업체의 평균산재해율 미만이거나 초과여부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 또는 감점(±2점)을 받게 됩니다.



당사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작업전 5분 안전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 및 교재로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의 인정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1. 교육방법 : 작업시작전 관리감독자가 작업자에게 작업시작전 5분~10분 교육 실시(체조, 작업지시, 등은 별도 시행)
2. 교육교재(교안)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5~10분 교육분량의 ONE-PAGE-SHHEET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자에게 배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분할 실시된 교육은 해당월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